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하나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u>해양수산부장관</u> -----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③ ----- <u>해양수산부장관</u> ----- ----- ----- ----- -----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
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 하나의 시·
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
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

-----.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양수
산부장관-----

-----.

1. ~ 5. (현행과 같음)

③ -----
해양수산부장관 -----

-----.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

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을 충족할 것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
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
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
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
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
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

-----.

1. (현행과 같음)

2. ----- 해양수산부장관-----

② -----

----- 해양수산부
장관-----
--.

③ -----
해양수산부장관-----

-----.

④ 해양수산부장관-----

-----.

제13조(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

의 지정기준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않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그 관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하여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의 지정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

② 해양수산부장관-----

-----.

③ 해양수산부장관-----

-----.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 보급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천

일염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위하

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개발된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

정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

산공정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

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금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들여온 것 중 자가소비용 또

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

는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 보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

② 해양수산부장관-----

-----.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해양수산부장

관-----

5. 무상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
시가 명확한 소금으로서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
금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
청) ① ~ ③ (생략)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
정서를 발급하고, 그 명칭·주
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5. -----

----- 해양
수산부장관-----

--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
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

-----.

⑤ -----

----- 해양수산
부장관-----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략)

2. 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의 경우: 불합격 사유 및 내용 등을 신청인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해당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릴 것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금의 불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

1. (현행과 같음)

2. -----

----- 해양수산부장관 -----

⑥ 해양수산부장관-----

-----.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양수산부장관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천일염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u> <u>장</u>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 ----- <u>해양수산부장관</u>----- -----.
---	---